

의안번호	제 860 호
의 결 연 월 일	2021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21년 10월 1일

#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60
----------	-----

제출연월일 : 2021. 10.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이유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맹동면·덕산읍 고등학교 평준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이상인 88.11%가 찬성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지역까지 확대하고,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 조건을 현실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청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충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로 한다.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청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충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으로”로 한다.” 로 개정

##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나. 비용추계서: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관계법령: 별첨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청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충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로”를 “청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충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으로”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2조의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은 2023학년도 입학  
생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u>청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충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u>로 한다.</p>	<p>제2조(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 ----- ----- ----- ----- ----- <u>청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충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으로 ---.</u></p>

##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90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학교군 설정

나. 학생배정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제4호 및 제3항의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 3.] [충청북도조례 제4354호, 2020. 1. 3.,  
일부개정]

제2조(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청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충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부칙< 제3638호, 2014.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54호, 2020. 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충주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는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